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211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2112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나82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가단455867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나8297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하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하천의 횡적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위 다목 후단의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된다. 따라서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나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가 위 나목 또는 다목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속하려면, 그 제방이 같은 법 조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등이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하천관리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소유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6년 12월경 시행한 '여의천 제방 보강 및 하도정비공사'에 의하여 하천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로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하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하천법상의 손실보상과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관한 법리나 판례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 변론기일인 2012. 9. 14. 진술된 2012. 3.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소가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반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청구가 손실보상청구가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들의 선대인 H이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처분하여 이미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과 소유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로서는 하천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선 정 자 목 록

1. A

2. B

3. C

끝.